

『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·운영,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제1장 총칙
 - 총괄사항 (제1조 내지 제4조)
 - 목적, 용어의 정의, 다른 법률과의 관계, 적용대상범위
-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
 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·운영
 - 협의회 기능
 - 회의, 간사, 수당 및 여비
-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
 -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 시책의 수립
 -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

-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
- 친환경상품 구매의무
- 친환경상품 구매예외
- 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
- 교육훈련

○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

-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
-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
- 친환경상품 정보 제공
-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

○ 보칙

- 기관평가
- 포상
- 사무분장
- 시행 규칙

4. 참고사항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친환경상품 구매·생산촉진시책의 수립, 구매의무, 구매예외, 판단기준의 설정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)
-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판매지원, 정보제공, 구매 증진사업 평가 및 포상,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17조부터 제24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·소비·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